

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22일 김양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충북문화관 개관에 따라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작품의 구입 조문 삭제
  - 작품의 구입에 대한 조문을 삭제(제12조 삭제)
- 위탁기간의 조정(안 제13조)
  - 현행 : 2년기간에 필요한 경우 연장
  - 개정 : 2년기간에 1회에 한하여 연장
- 이용자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5호)

- 제2조제5호 :“이용자”란 시설내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

- ~의 규정에 따라 → ~에 따라
- 대한 → 대하여
- 범위 내에서 → 범위에서 등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문화관이 9월 6일 개관됨에 따라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제12조의 작품의 구입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,
- 안 제13조에서 2년 기간에 필요한 경우 연장하도록 한 위탁 기간을 2년기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하며,
- ~의 규정에 따라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